

의안번호	2219114
의 퇴 인	김주영 의원
회 답 일	2026. 7. 3.
추 계 번호	26F273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2027년 4억원, 2029년 4억원 등 2027~2029년까지 3년간 총 12억원(연평균 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64조 제4항)	-4	-4	-4	-12	-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4조 제4항 (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)	○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 선박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.12.31.→(개정안)2029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4조 제4항 (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(이하 '친환경선박')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: 1.0억원
 - 향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의 수는 해양수산부가 「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('21~'30년)」에 따라 실시 중인 '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' 사업의 최근 5개년('21~'25년) 연평균 실적에 따른다고 가정
 - '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' 사업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실적: 4건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친환경선박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,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
- (추계방법) 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추계
 -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 -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은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2024년 1개년도 실적이 전부임
 -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총 감면 실적: 3.98억원(4건)

-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 1건당 평균 감면액: 1.0억원

[표 2] 2024년 친환경선박 취득세 감면실적

(단위: 억원, 건)

	건수	감면액
2024년	4	3.98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

- 향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선박의 수는 해양수산부가 「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('21~'30년)」에 따라 실시 중인 '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' 사업의 최근 5개년('21~'25년) 연평균 실적에 따른다고 가정
 - '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' 사업은 국가인증 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내항선박을 건조하려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선박 건조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사업
 - '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' 사업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실적: 4건

[표 3] 친환경선박 보급 및 운영지원 사업 계획 및 실적

(단위: 척)

지원년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	합계
계획	3	5	7	7	8	8	7	7	6	-	58
실적	3	5	6	6	2	-	-	-	-	-	-

자료: 해양수산부 설명자료

(2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2027년 4억원, 2029년 4억원 등 2027~2029년까지 3년간 총 12억원(연평균 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취득세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친환경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64조 제4항)	-4	-4	-4	-12	-4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